교수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안산대학교 교수회 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칙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2. 교수와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
3. 진급, 졸업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지도와 상벌에 관한 주요 사항
5. 학사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6. 교수회 운영에 필요한 교수회 규정 및 총장후보 추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교수회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(이하“교수”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강의전담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외국인교원은 제외한다.

② 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, 부의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③ 서기는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교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의원의 임기) ① 당연직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교수회를 대표하며, 교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교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일시, 장소, 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수회는 재적 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제3항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장이 거부할 경우, 재적교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한다.

제7조(총장 후보 추천) 교수회는 총장 임기만료 60일 이전에 법인 이사회에 총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 총장후보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후보추천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료제출요구)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내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